

제533호 2020.04.24.(금)

♡군민을 위한 유익한 정보지♡

	목	차	
4 人人			

I.

군정 소식
1. 행복한 가정을 위한 예비(신혼)부부교실 대상자 모집3
2. 다둥이 가족 행복여행4
3.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안내5
4. 임신부(해피맘) 교통카드 지원사업 안내6
5.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안내7
6.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안내8
7.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군비 확대지원 안내9
8.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및 결혼장려금 지급 안내11
9.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12
0.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4
1.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16
2. 광산세무서 개청 및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 안내17
3.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18
4. 2020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9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

16.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신청 접수21
17. 2020년 소상공인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안내22
18. 2020년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안내23
19. 2020년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안내23
20. 2020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안내24
21.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 안내24
22. 영광군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25
23. 영광군 다함께돌봄센터(모두의놀이터)운영 안내26
24.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계약신청 안내27
25.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안내28

차

Ⅱ. 기타 소식

1.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연장 시행29
2. 도로명주소 이렇게 쓰고 읽습니다33
3. 2020년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 안내34
4.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간 및 전문교육기관 안내3
5.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36
6. 영농폐기물 소각 미세먼지의 또 다른 원인37
7. 해외에서 입국 시 돼지고기(가공품 포함) 가져오지 마세요!38
8. 4월 국정홍보 만화(해양안전공감콘텐츠-갯벌안전)3
9. 4월 국정홍보 만화(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40

목

행복한 기정을 위한 예비(신혼)부부교실 대상자 모집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자신과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행복하고 건강한 결혼생활 환경 조성

□ 사업기간 : 2020. 6. ~ 12월중 토요일(일정조정 가능)

□ 자격조건 : 신청일 기준 둘 중 한 명이라도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또는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

□ 교육횟수 : 1, 2기 총 4회(기당 20쌍, 2회 운영)

□ 교육장소 : 여성문화센터(장소변경 가능)

□ 교육내용 : 결혼에 대한 의미와 상대 배려, 의사소통과 갈등 해결

방법, 준비된 임신과 태교 교육 등

□ 접수기간 : 2020. 4. 10.(금) ~ 4. 29.(수)

※ 접수시간 09:00 ~ 18:00(주말, 공휴일 제외)

□ 제출서류

- 예비(신혼)부부교실 참가신청서<서식 1>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또는 주민등록초본 직접 제출

□ 접수방법 : 선착순 방문 및 팩스접수(팩스 061-350-5622)

※ 팩스 발신 후 정상수신 확인 반드시 필요하며 미확인 시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인구일자리정책실 결혼출산팀

□ 선정결과 발표 : 5. 8.(금) 개별통보

문의 :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350-4813, 350-4672)

다둥이 가족 행복여행

가족여행이 어려운 다둥이 가정을 지원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기회 제공 및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 사업기간 : 2020. 6. ~ 10월중(일정조정 가능)

□ 자격조건 : 신청일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족

□ 여행기간 : 2박 3일

□ 장 소 : 국내(제주도 일원 예정) - 장소변경 가능

용 : 가족화합 프로그램, 지역문화 탐방, 가족체험, 기념앨범 제작 등

□ 지워시청 및 적차

□ . I G G O ≥ G	1			
대상자 모집 공고		지원신청(방문 또는 팩스)		대상가정 확정
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일자리정책실 및 읍 면사무소		인구일자리정책실
·영광군 홈페이지 공고	\rightarrow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서 ·최구원 가가부현료 남부 회에서	\rightarrow	·서류 심사 및 대상가정 확정

% 주민등록등본 기재사항(주소변경 포함, 세대원 전부 주민등록 번호표기, 세대구성 사유

및

및 구성일자, 변동사유 등 포함) ※ 부·모·자녀가 반드시 동행하고 여행 불참자 발생 시 후순위로 선정

□ 접수기간 : 2020. 5. 11.(월) ~ 5. 29.(금) ※ 접수시간 09:00 ~ 18:00(주말, 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방문 및 팩스접수(팩스 061-350-5622)

※ 팩스 발신 후 정상수신 확인 반드시 필요하며 미확인 시 접수 불가

□ 선정결과 발표 : 6. 12.(금) 개별통보

문의 :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350-4813, 350-4672)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 기 간 : 연중

□ 지원대상

○ 만49세 이하의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내용

○ 부부 중 한 명에게 결혼장려금 500만원 이내

○ 2년간 3회 분할 지급(1회 200만원, 2회 150만원, 3회 150만원)

□ 지원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 이행서약서

- 통장사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신 청 일 : 혼인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초과시 지원불가)

□ 지원절차

○ 혼인신고 시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제출(읍·면) → 다음달 5일까지 인구일자리정책실 송부 → 서류 확인 후 다음달 15일까지 통장 지급

※ 결혼장려금 지원 기간 중 이혼 또는 지원대상자 관외 전출시 지원중지

문의 :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350-4813, 350-4672, 350-4673)

- 5 -

영광군 신생이 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 기 간 : 연중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지원대상자인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

□ 지원내용

구 분	지원금액	지 원 방 법
첫 째 아	500	500만원 • 첫달 100만원, 둘째 달부터 20만원씩 20개월
둘째아	1,200	1,200만원 • 첫달 120만원, 둘째 달부터 30만원씩 36개월
셋째아 ~ 다섯째아	3,000	3,000만원 • 첫달 150만원, 둘째 달부터 50만원씩 57개월
여섯째아 이상	3,500	3,500만원 • 첫달 255만원, 둘째 달부터 55만원씩 59개월

※ 부모 또는 해당자녀가 지원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시 양육비 지원 중단 됨

□ 변경 적용 : 2020. 1. 1.출생아부터(이전 출생아는 종전 조례 적용)

□ 자녀의 순위결정

○ 둘째 이상 자녀의 순위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 등록을 두었던 자녀를 대상으로 결정.

다만, 13세 이상인 자녀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자녀의 순위에 포함

□ 지원신청 및 절차

○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읍·면) → 다음달 5일 까지 인구일자리정책실 송부 → 서류 확인 후 다음달 15일까지 통장 지급

문의 :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350-4672, 350-4673, 350-4813)

임신부(해피맘) 교통카드 지원사업 안내

□ 기 간 : 연중

□ 지원대상

○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

□ 지원내용

○ 1인당 30만원 교통카드 지원(1인당 1회 한함)

○ 택시 및 버스 이용 시 교통카드로 결제

□ 지원신청

○ 신청장소 : 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결혼 출산팀

○ 제출서류

- 임신부(해피맘) 교통카드 지원 신청서

- 임신사실 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지원절차

○ 임신 사실 확인서 지참 \rightarrow 인구일자리정책실 신청 \rightarrow 임신부 교통 카드 발급신청서 작성 \rightarrow 교통카드 발급

문의 :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350-4672, 350-4673, 350-4813)

- 6 -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안내

□ 기 간 : 연중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로 첫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 부부

□ 검진기관 : 영광종합병원, 영광기독병원, 도내 병의원, 산부인과, 비뇨기과

□ 지원내용 : 검진비 본인부담금 중 여성 17만원, 남성 9만원 이내/1인1회

□ 검진항목

임신을 위한 다음의 지정 건강항목 중 본인부담금 중 지원한도액 이내 지원

구 분	여 성	남 성
검진 지정 항목	초용파검사 자궁초음파, 질초음파, 유방초음파 자궁질환 관련 검사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영 등 황채검사 국정보육, 유형간영, C형간영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성병검사(대독, 에이즈, 등) 흥부 X-Ray(결핵, 폐질환 등) 기타지원항목 철액형, 빈혈, 감석, 간기능, 신장기능, 난관이상검사,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 비타민인검사, 비만도검사	

□ 지원절차

○ 검진안내→ 검진실시→ 검진비용청구 신청서 작성(대상자)→ 서류검토및 지급확정→검진비 지원(인구일자리정책실)

□ 신청서류

	구 분	신 혼 부 부	예비부부
•	고통	①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신청서 1박 ② 개인정보제로 동의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진료내역서(본인부당금 확인가능서류) 1 ③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1부 ⑤ 동장사본 1부	
	추가	⑥ 혼인관계증명서 1부 ⑦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소가 다를 경우)	⑥ 예식장계약서 1부

문의 :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350-4672, 350-4673, 350-4813)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군비 확대지원 안내

□ 기 간 : 연중

□ 지원대상 및 내용

시설	술 종류 및	횟수	정 부	정 부 지 원 군비 추가지원		
(건강보험	정부지원	적용 횟수)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정부지원 횟수 동일)	
	신선배아	1~4회	110만원	90만원	150만원 이내	
체외수정	근근메이	5~7회	90만원	90인권 150인권 이내		
세치구.9	동결배아	1~3회	50만원	40만원 50만원 이내		
	동절매약	4~5회	40만원	- 40인원 SO인원 이대		
이고	수정	1~3회	3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내	
20	To	4~5회	20만원	- 20한편 30한편 이대		

※ 정부·군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시술 시작일 20. 1. 1.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횟수에 한하여 매 회 시술종류 및 기준대로 지급 (이전 시술자는 중전대로 지원)

○ 정부지원

-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독 180% 이하자**로 시술시작일 기준 부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광군인 자
- 의료기관 시술 전 군 인구일자리정책실로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제출 후 자격 판정 필요

○ 군비 추가지원

- 시술별 **건강보험 정부지원 적용횟수에 한하여** 시술시작일 기준 부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광군인 자
- 정부지원 해당자의 경우 정부지원금 우선 적용 후 군비 차액 지원

□ 신청장소 : 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 군비 추가지원 신청기한 :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제출서류

○ 정부지원 + 군비지원 해당자

- 난임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 시술기간내 원외약품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약 이름, 금액 필히 기재)

- 입금통장사본 1부

- 9 -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및 결혼장려금 첫 회 지급액 중 50만원 영광사랑카드로 지급

신생아 양육비 및 결혼장려금의 지역상품권 지급을 통하여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로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관련근거 :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3항 신생아 양육비 및 결혼장려금 지원 금액 중 첫 회 지급액의 50만원을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지원금 현황

- 신생아 양육비
 - 첫째아 500만원(**첫 달 100만원**, 둘째 달부터 20만원씩 20개월)
 - 둘째아 1,200만원(<mark>첫 달 120만원</mark>, 둘째 달부터 30만원씩 36개월)
 - 셋째아 ~ 다섯째아 3,000만원(첫 달 150만원, 둘째 달부터 50만원씩 57개월)
 - 여섯째아 이상 3,500만원(<mark>첫 달 255만원</mark>, 둘째 달부터 55만원씩 59개월)
- 결혼장려금
 - 500만원(첫 달 200만원, 1년 후 150만원, 2년 후 150만원)

□ 영광사랑카드 지급 내용

- 첫 달 지급액(일시금) 중 50만원을 영광사랑카드로 지급
- 일시금 나머지 현금으로 계좌 지급
- □ 지급 기준 월
 - 4월(3월 신청 접수)부터 지급

□ 지급 방법

○ 신청 다음 달 15일까지 영광사랑카드 우편 배송 및 충전

※ **문의처** :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350-4672, 350-4673, 350-4813)

〇 군비지원 해당자

- 난임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 시술확인서 1부(시술명, 시술기간, 차수, 임신여부 반드시포함)
- 진료비 영수증 1부(치료기간이 의사소견서 상의 시술기간과 동일)
-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시술기간내 원외약품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약 이름, 금액 필히 기재)
- 입금통장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지원절차

- 정부지원 + 군비지원 해당자 : 인구일자리정책실 지원 신청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 난임시술 완료 → 서류 검토 후 지급
- 군비지원 해당자

난임시술 완료 ightarrow 인구일자리정책실 지원 신청 ightarrow 서류 검토 후 지급

문의 :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350-4813, 350-4673, 350-4672)

- 10 -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우리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12월

○ 사 업 량 : **10가구**

O 신청자격 :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영광군 내 주택을 구입한 자

구 분	사업대상	(연)소득기준	대상주택	구입시기	비고
	결혼 7년 이내,	(맞벌이) 8천	주택가격	2019. 12월	대출 실행일
21 * H H	부부 모두 만	5백만 원 이하	3억 원 이하,	~2020년	로부터 3개월
신혼부부	49세 이하	(외벌이) 7천	면적 100㎡ 이내		이내에 혼인
		만 원 이하			신고 예정자
	미성년 자녀	부부합산	주택가격		포함
다자녀가정	3명 이상	1억 원 이하	3억 원 이하,		
444778	(자녀 중 1명은		면적제한 없음		
	만 12세 이하)				

※ 제외대상 : 1가구 다주택 소유자,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한국 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등

○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월정액 최고 15만 원, 3년간)

□ 지원금 지급

O 지급시기 : 연 2회(6월, 12월)

○ 지 급 액 : 상·하반기 이자납입 실적분(기준 월정액×납입 월 수)

대출잔액(최초 신청 시) 기준	월정액(연 최대 지원액)
1억 원 이상	15만 원(180만 원)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10만 원(120만 원)
5천만 원 미만	5만 원(60만 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4. 6.~8. 28.(사업량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제출서류(2020. 3. 30일 이후 발급된 서류) 첨부하여 방문 신청
- O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인구일자리정책실

― 제출서류

- ①「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신청서 1부.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③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 란에 대한 표기를 **전부공개**로 발급 요청
-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 ⑤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물건지 표기) 1부.
- ⑥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1부.
- ⑦ 주택매입계약서(본인 명의) 사본 1부
- ⑧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 1부.
-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거래내역확인서
- ⑨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결혼 예정자)
- ⑩ 위임장(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 문의처 : 영광군 인구일자리정책실 (☎ 061-350-5256)

- 13 -

- 제출서류 -

- ①「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청서 1부.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③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 란에 대한 표기를 전부공개로 발급 요청
-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 ⑤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물건지 표기) 1부.
- ⑥ 전세(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1부.
- ①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직인날인, 대출금액 및 용도 표기 발급) 1부.
- ⑧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1부.
- ⑨ 부부 소득 확인서류 각 1부.
- 소득 有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無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⑩ 위임장(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 문의처 : 영광군 인구일자리정책실 (☎ 061-350-5256)

신혼부부·다자녀기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우리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12월

○ 사 업 량 : **30가구**

○ 신청자격 :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 거주조건 : **가구 구성원(부부, 자녀)이 전세주택(관내)에 주소**를 둔 경우

- 대상조건 : (신혼부부) 결혼 7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소득조건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월정액 최고 15만 원, 3년간)

□ 지원금 지급

O 지급시기 : 연 2회(6월, 12월)

○ 지 급 액 : 상·하반기 이자납입 실적분(기준 월정액×납입 월 수)

월정액(연 최대 지원액)	대출잔액(최초 신청 시) 기준
15만 원(180만 원)	1억 원 이상
만 10만 원(120만 원)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l만 5 만 원(60만 원)	3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미만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사업량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첨부하여 방문 신청

O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인구일자리정책실

- 14 -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영광군 지방규제신고센터에서는 기업 규제애로 신고를 접수하여 상담 및 사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규제애로 신고는 찾아가는 지방 규제신고센터 방문을 통해 현장 청취 후 담당부처 및 부서에 전달하여 답변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운영기간: 2020. 3월 ~ 12월
- □ 추 진 단: 11명(전담관, 규제부서, 사업부서, 전문가, 상공인)
- □ 대 상: 산업단지, 농공단지, 중소기업 등 규제애로 기업 및 지역 소상공인 등
- □ 내 용: 기업체 및 소상공인, 군민의 규제애로 직접 청취 및 개선 방안 모색 등
- □ 건 의: 영광군청 기획예산실 의회법무팀 ☎061-350-5716,5717
- □ 운영절차

규제건의 및 발굴		현장방문		규제해소		결과회신
- 유관기관 및 단체		- 규제현장 방문,		- 자체 해결방안 검토		- (원칙)방문일로부터
(상인회, 건축사 협회,		직접 문제점 확인		(적극 법령 해석		3개월 이내 회신
직능단체 등)				포함)		
		- 규제피해 당사자,				* 처리 지연시 최종
- 기업 관련(투자, 입지		전문가 등 종합적		- 법령 제·개정 필요 시		결과 회신기한 연장
등) 부서민원	⇒	의견 수렴	⇒	협의 요청	⇒	(최장 1월 이내) 안내
				(→ 행안부)		
- 유관 기관·단체		개별기업/시장/상가/		시급한 과제는 개별		- (행안부) 부처협의,
간담회		산업단지 등 현장 방문		안건 부처협의 추진		(각부처) 수용여부
*업계 규제 전반				(행안부 사전 공유)		검토 및 회신
파악						★ 분기별

광산세무서 개청 및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 안내

광산세무서 개청

○ 개 청 일 : 2020. 4. 3.

○ 관할구역 :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라남도 영광군○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83(하남동)

○ 전 화 : 062-970-2200 ○ 사 이 트 : https://g.nts.go.kr/gws

「국세·지방세 등합민원실」 운영

○ 개 소 일 : '19. 10. 28.

○ 위 치 : 영광읍 물무로2길 61(군청 별관 1층)

○ 처리업무 : 국세, 지방세 관련 제증명 동시 발급, 신고·상담, 사업자등록 처리,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처리 등

○ 운영시간 : 10:00 ~ 17:00

○ 전 화 : (국세) 352-6202~3 (지방세) 350-5518

○ 팩 스: 352-6211

※ 광산세무서 영광출장소 통합 운영

- 17 -

○ 대 상: 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우리 군에 둔 12월말 결산 법인(2019년 귀속 법인소득)

2020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안내

○ 신고·납부기한 : 2020. 4. 1.~ 2020. 5. 4.(1개월)

○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 × 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 초과 금액 × 2%)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800만원 + (200억 초과 금액 × 2.2%)
3천억원 초과	65억5천8백만원 + (3천억 초과 금액 × 2.5%)

○ 신고시 제출서류

분류	종류	서식 (지방세법 시행규칙)
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43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별지 43호의2
	안분명세서	별지 44호의6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별지 43호의3
	가산세액 계산서	별지 43호의4
 첨부서류	특별징수세액명세서	별지 43호의5
名十八m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소급공제 환급신청서(해당하는 법인만)	별지 43호의9

※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시 무신고 가산세 부과

○ 신고·납부 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영광군청 재무과 방문신고·납부

- 19 -

☞ 문의 : 영광군청 재무과 세정팀 (061-350-5394)

2020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안내

○ 대 상: 2019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아자·배당·세업·군로·영급·기타소득)

○ 신고기한 : 2020. 5. 1.~ 2020. 6. 1.(1개월)○ 과세표준 : 국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 세 월: 0.6%~4.2% 초과누진세율

○ **신고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우편 접수, 방문신고

○ **납부방법** : 납부서,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은행현금지급기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납부기한 연장

- (기존) 6월 1일까지 신고·납부

- (변경) 6월 1일까지 신고 후, 8월 31일까지 납부

※ 신고기한 내 무신고 시 : 무신고가산세 20% 부과

※ 납부기한 내 무납부 시 :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25% 부과

○ 5월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운영

- 위 치 : 군청 별관 1층(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 방문대상 : 단순경비율대상자(F, G유형),단일종교인소득자(Q, R유형)

※ 방문신고 시에는 우편발송된 신고안내문을 가지고 방문

☞ 문의 : 영광군청 재무과 세정팀 (061-350-5518)

- 18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20.2.21.일자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기존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 의무화
- 허위계약 금지

□ 부동산 거래신고 변경사항(2020.2.21.시행)

항 목	기 존	변 경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계약체결일 ~60일 이내	계약체결일 ~ <mark>30일 이내</mark>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동산 거래계약해제 등 신고	<신설>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무효, 취소 등 확정된 날로부터 <mark>30일 이내 신고 의무</mark>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허위계약 신고 금지	<신설>	- 허위계약을 신고할 경우 처벌 - 허위계약 신고시 신고포상금 지급 ※ 위반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신청 접수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대료 인하한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감면

	감면세목	:	2020.	7월분	재산세(건축물)
--	------	---	-------	-----	----------

□ 대 상 자 :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 감면내용

-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에 비례하여 재산세 감면(최대 50%)
- 임차인의 실질적 혜택을 위하여 3개월 평균 인하율이 최소 10% 이상시 감면

□ 신청기간 : 2020. 4. ~ 6. 30.(화)

□ 접 수 처 : 재무과 세외수입과표팀

□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팩스(061-350-5539) / 접수확인 필요

□ 제출서류

-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료 거래 통장 입금내역 사본(인하 전 및 인하 후 임대료)
- 임대료 인하 약정서 사본(신청일 기준 이후 인하 적용시)
- 임차인의 간이 과세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확인 필요)

문의사항: 영광군청 재무과(☎ 350-5313, 350-5393)

- 21 -

2020년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안내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가구의 가스시설 개선으로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 안전에 기여

□ 신청기간 : 2020. 4. 27.~6. 30.

□ 지원대상 : 300가구(LP가스를 고무호스로 사용 중인 서민층)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심한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경로당

□ 사업내용 : LP가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무료 교체

□ 신청문의 : 투자경제과 에너지산업팀(☎ 350-5447) 및 읍면사무소

2020년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안내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가구,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타이머콕 보급으로 안전한 가스사용 지원

□ 신청기간 : 2020. 4. 27.~6. 30.

□ 지원대상 : 283가구(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노인성질환자 등)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심한장애인, 소년·소녀가장

□ 사업내용 :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무료 설치

□ 신청문의 : 투자경제과 에너지산업팀(☎ 350-5447) 및 읍면사무소

2020년 소상공인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안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게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한시적으로 영광사랑 카드 매출로 인한 카드 수수료 지원

□ 지원기간 : 2020. 1. 1.~11. 30.

□ 지원대상 :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전년도 매출액(2019년)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점포

□ 지원내용 : 2020년 영광사랑카드 매출 수수료 0.5% 지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 상반기 : 4. 1.~5. 30. (2개월) → 2020. 1. 1.~5. 31.까지(6월 지급)

- 하반기 : 10. 1.~11. 30. (2개월) → 2020. 6. 1.~11. 30.까지(12월 지급) √ 상반기 신청 사업체는 하반기까지 자동 지원 (하반기 지원 불요)

· 한반기 신청은 상반기 미 신청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상반기 지원금에** · 대해서는 소급 지원 불가

○ 제출서류

- ①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④ 사업주 명의 통장 사본
- 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9년분) → 군청 별관 1층 영광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면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매출 중빙가능 서류
 -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내역 :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 조회 서비스(www.cardsales.or.kr)의 2019년도 카드매출 실적자료(매입 내역 조회) 등 카드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 현금영수증 매출자료 조회내역
 - 기타 국세청 발급 서류 등
- ⑥ 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사업주 도장 날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 신청문의 : 투자경제과 지역경제팀(☎ 350-5452)

- 22 -

2020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안내

주택에 신재생에너지원 설치로 에너지 자립도 향상 및 전기요금 절감에 따른 가게 부담 완화

□ 신청기간 : 2020. 4. 13.(월)부터 신청마감 시까지

□ 지원대상 : 2020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사업승인을 받은 자

(그린홈 greenhome.kemco.or.kr에 신청)

□ 사 업 량 : 37가구(선착순 지원)

□ 사업내용 : 신재생에너지원(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 보조

□ 보 조 금 : 태양광 3kW기준 설치비 5,028천 원 중 3,519천 원(70%) 보조

□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업 승인 후 사업지원신청 구비서류

작성하여 영광군 투자경제과에 직접 서면 제출

□ 신청문의 : 투자경제과 에너지산업팀(☎ 350-5534) 및 읍면사무소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 안내

군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에너지 자립마을 확산을 위해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 추진

□ 신청기간 : 2020. 4. 16.~5. 20.

□ 대 상 : 영광읍, 군서면 일원 주택 및 건물 소유자

□ 사 업 비 : 40억 원(국비 20, 지방비 12, 자담 8)

 $\hfill\Box$ 지원내용 : 주택・공공・상업건물 등이 혼재된 특정지역에 1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비 일부 지원

□ 지원규모 : 1,700kW / 500개소(주택 475, 공공·산업시설 25)

□ 신청문의 : 투자경제과 에너지산업팀(☎ 350-5447)

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 대책에 따른

영광군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

코로나19로 매출액의 급격한 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전기, 가스, 수도) 등 고정비용을 한시적으로 보전하여 경영안정 지원

□ 추진개요

가. 신청기간 : 2020. 4. 7. ~ 5. 29.나. 지원대상 : 영광군 소재 소상공인

- 영광군에 사업장을 등록・유지하고 있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소싱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시업장(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시업장)
 제외대상: 시행성 업종, 유흥주점, 택시종시자, 태양평발전업 등 (소진공 융자제외 업종)

다. 지원내용 : 30만원 1회 지급(월 10만원, 3개월 기준)

라. 지급방법 : 영광사랑카드 지급(6월중)

□ 신청접수 방법

가.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군청 투자경제과

나. 신청대상 : 사업장 대표자(신분증 지참)

다. 제출서류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 신 청 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 청 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키치세 과세표준증명 건강보험 사업장 기입자별 부과확인서(1인 사업체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신 청 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키차세 수입금액증명 건강보험 사업장 기입자별 부과확인서(1인 사업체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25 -

영광군 다함께돌봄센터(모두의놀이터) 운영안내

□ 돌봄서비스 운영 안내

○ 위 치 : 영광군청(별관)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만 6세~12세(초등학생) 아동

- 소득수준 무관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의 부 혹은 모가 일하는 경우

- 다자녀 가구, 부모의 근로시간이 길거나 출퇴근 소요시간이 기 경우

○ 운영시간 : 학기 중(월~금, 13:00~20:00), 방학(09:00~20:00)

○ 신청방법 및 절차

- 보호자가 이용 희망을 센터에 전화(☎ 353-1313)하여 돌봄서비스 신청 후 센터 내소하여 방문상담 진행

- 센터는 정원 및 현원 고려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이용결정통보 이메일 또는 문자(유선) 가능

○ 사업내용

- 학습 및 놀이중심 프로그램 운영, 숙제지도 및 신체활동지원,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등

- 26 -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계약신청 안내

주요 농산물 과잉생산과 수입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기반 마련을 위해 최저가격 보장제 추진

① 계약신청 : 2020. 4. 30.까지 ② 재배계약 : 2020. 5. 31.까지 ③ 대상품목 : 고추, 대파, 양파

④ 지원대상 : 해당품목 1,000㎡ 이상 계약재배 농가(최대 1ha 지원)

⑤ 재배계약 : 읍 • 면장, 지역농협장, 농식품부고시 생산자단체

○ 생산자단체 : 최근 3년 이상 연속해서 관내 농가와 계약재배 및 수매실적이 있는 영농조합법인

○ 읍·면장과 계약을 체결한 포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농가 스스로 책임 판매하여야 함.

⑥ 주요내용

○ 지원내용 : 지원품목이 최저가격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 차액 지원

○ 지급기준 :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되었을 때

○ 최저가격 : 매년 상반기에 운영위원회 심의·결정

○ 지원제외 : 농가 임의 처분량에 대해서는 최저가격 보장에서 이를 제외

- 밭떼기 거래 등 상인과 계약체결한 면적

- 대상품목의 품질이 중품(中品), 하품(下品)으로 상품성을 상실한 경우

- 채소가격안정제사업 폐기처분에 불응한 경우

○ 최저가격 지원신청 및 지급

-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차액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농협 또는 영광 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생산자단체의 해당품목 출하 증명서류 첨부

- 출하증명 서류에는 농가별·품목별 계약체결 내용과 출하실적 및 업체별 판매현황 등이 포함되어야 함

문의 : 영광군청 농정과 원예특작팀(☎ 350-4841 / 4836 / 5581)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안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 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

□ 부과대상

-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영광군에 등록된 자동차

□ 납부대상자 및 납부기간

○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기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 (단, 부과기간중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소유기간별로 부과)

○ 부과기준일 : 2019. 12. 31.

○ 부과기간 : 2019. 7. 1. ~ 2019. 12. 31.

납부기간 : 2020. 3. 16. ~ 2020. 6. 30.(기존 2020. 3. 31. → 6. 30.로 3개월 연장)

□ 납부방법

○ 납부장소 : 전국 금융기관, 인터넷 납부 등

○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 간단e 납부 :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 스마트뱅킹 :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은행 스마트뱅킹 어플리케 이션을 이용 공과금 수납 가능

- 인터넷 납부 : 인터넷 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giro.or.kr) 사이트 접속(공인인증서 필요) 후 납부

- 자동이체 신청 납부(전국 금융기관, 도시환경과 상시 신청)

- 3월 중 연납신청·납부할 경우 2기분에 대해 10%감면혜택

□ 문의사항 : 영광군 도시환경과(☎061-350-5334)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시행

1. 추진계획

□ (기간) '20.4.20 ~ '20.5.5 (5월 연휴 종료 시까지), 총 16일

□ 주요내용

구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목표	보건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생 사례 억제	신규 확진자 감소 추세 유지
공공시설	운영 중단	실외, 분산시설 제한적 운영재개, 그 외 운영 중단
방역지침 준수	강력 권고	강력 권고
모임·외출· 행사	원칙적 자제·금지 권고	자제 권고, 제한적 허용 ·(필수적) 방역수치 준수下 허용 ·(불요불급한 경우) 자제 권고 * 지역축제, 대규모 기념식, 집회 등은 금지, 필수적인 시험은 실시 허용
행정명령 (종교, 생활체육, 유흥시설, 학원)	운영중단 권고 + 지침준수 명령 [*] * 미준수시 집회·집합금지, 벌금부과	운영자제 권고 + 지침준수 명령 [*] * 미준수시 집회·집합금지, 벌금부과

2.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 적용 대상 시설·업종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

□ 제한 사항 : 위 기간동안 운영자제 권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붙임1 참조)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29 -

- <다:클럽·쿌라텍·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ullet 이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sim}2m$ 거리 유지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 o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라 :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 -

① 공통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변형하여 적용 가능

② 기준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sim}2\mathrm{m}$ 이상 유지
- o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시설·업종별 준수사항

- <가 : 종교 시설 >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종교 행사 참여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단체 식사 제공 금지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 ·관리

- <나 : 실내 체육시설 > -

① 실내 체육시설 중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대상 ② 기준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체육지도자, 강습자 마스크 착용
-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 시설 내 단체 식사 제공 금지
-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 소독 철저 및 적정 인원 사용 관리
- * 일일 소독 대장에 함께 작성해 관리
- \circ 운동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최소 $1{\sim}2m$ 이상 유지
- * 운동기구 : 러닝머신, 벤치프레스 등 고정 운동 기구
- 및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줌바댄스 등) 금지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 · 관리

- 30 -

(붙임2) 사회적 거리두기 리플릿



사람과 사람 사이, <mark>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mark>에 동참하세요



도로명주소 이렇게 쓰고, 읽습니다

도로<mark>명주소</mark> 이렇게 쓰고, 읽습니다

찾기 쉬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이렇게 씁니다

도로명은 붙여 씁니다	중앙로1길(ㅇ)	중앙로 1길(x)
도로명과 건물번호 사이 는 <mark>띄어</mark> 씁니다	중앙로 203(ㅇ)	중앙로203(x)
건물번호와 동층호 사이 에는 <mark>쉼표(,)</mark> 를 씁니다	물무로3길 1, 101동 101호(ㅇ)	물무로3길 1 101동 101호 (x)

건물번호, 이렇게 읽습니다

(쓰기) 중앙로 203 = (읽기) 중앙로 이백삼<mark>번(</mark>0) 중앙로 이백삼번지(x) (쓰기) 중앙로 203-1 = (읽기) 중앙로 이백삼의 일<mark>번(</mark>0) 중앙로 이백삼의 일번지(x)

도로명주소 아는법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www.juso.go.kr)

- 33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간 및 전문교육기관 안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83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지정 고사(2020-192호, 2020. 2. 6.)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전문교육기관임

□ 안전교육 이수기간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까지인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이 201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안전교육 전문교육기관

기관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지정일	홈페이지
(사)한국크레인협회 (정원규)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 53, 대화빌등 3층 (전화 02-522-1507, 02-6959-1518·1528·1538 /FAX 02-858-1508)	2020.2.6.	www.cranes.or. kr
(사)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교육원 (박재영)	서울시 종로구 수표로 %, 국일관 드림빨리스 7층 (전화 02-741-8183, 02-420-0106~7 /FAX 02-420-0108)	"	www.kspeaed.
(사)안전보건진흥원 (조철호)	서울시 금천구 법안로 1152 독산빌딩 3층 (전화 02-804-7900/FAX 02-807-3900)	"	www.shai.or.kr
(사)한국안전보건협회 (윤여송)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화이테크시티 1동 1107호 (전화 02-3666-9777/FAX 02-3667-9989)	"	www.csha.or.kr
(사)건설기계개별연명 사업자협의회 (이주성)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로 49 3층 (전화 042-523-8050/FAX 042-523-8051)	"	edu.kungi.kr

※ 전문교육기관 별 강의 개설일자 및 장소 추후 홈페이지 공지 예정

2020년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 안내

□ 필요성 및 추진배경

-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정화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므로 지하수 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청정 지하수 환경 조성과 전국에 감추어진 방치공에 대한 자료 확보를 위하여 전국에 감추어진 방치공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환경부와 K-water에서는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자 방치공 찾기 운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용되지 않는 방치공이 적절하게 처리되어 지하수 오염이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방치공 찾기 운동에 다같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관 : 환경부

□기 간:연중

□ 대 상 : 전국에 방치·은닉된 방치공(온천, 먹는샘물 포함)

□ 신고(전화)

○ 각 시 · 군 · 구 방치공 신고센터(지하수담당과)

- 영광군청(건설과 건설행정팀 061-350-5486)

○ K-water 방치공신고 무료전화(080-654-8080)

□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K-water 국가지하수정보센터 : 전화 042-629-4484 ~ 4486

· 반치고이라?

개발실패 및 사용이 종료되었거나 적절하게 되메움 되거나 자연 매몰되지 않은 상태로 관리대상 에서 누락, 방치되어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불용공을 의미함

* 방치공으로 인한 문제점 : 지표오염원 유입창구, 오염원으로 작용, 지하 심부까지 이동시키는 이동 통로, 생명체의 안전 위협 등

- 34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mark>화재·폭발·붕괴</mark>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mark>의무보험</mark>입니다.

□ 가입대상

- 1층 일반·휴게음식점(100㎡이상), 숙박업소, 15층이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주유소,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 자동차터미널,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지하도상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 2020년 1월 7일부터 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15층이하 <mark>임대 공동주택</mark> 및 연립・다세대주택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보상범위

○ 신체피해 : 피해자 수에 관계없이 1인당 1억5천만원까지

O 재산피해 : 10억원까지 보상

□ 가입기한

O 기존 가입시설 : 보험기간 만료일 전까지

O 신규시설 : 인허가 후 30일 이내 또는 사용개시 전까지

O 20. 1. 7. 확대 공동주택 : 보험가입 유예 특례기간(20. 7. 6.)까지

영농폐기물 소각 미세먼지의 또 다른 원인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 044-201-1574)



- 37 -

해외에서 입국 시 돼지고기(가공품 포함) 가져오지 마세요!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044-201-2537)



- 38 -

2020년 4월 국정홍보만화 (해양안전공감콘텐츠-갯벌안전)

गीर्त्वेश ही श्रीसेत स्त्रीक भी















2020년 4월 국정홍보만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유리에에 어린에져 - 유치원토 어린이금식판리지원센터 지원받고 싶어요!















- 39 -